

2025년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

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

▶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▶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 :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별표4 ‘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’

1) 2024년 1월 1일 요양보호사가 **입소자 2.1명당 1명** 이상인 노인요양시설

(단위 : 원)

등 급	2024년 수가	2024년 본인부담금	2025년 수가	2025년 본인부담금
1 등급	84,240	16,848	90,450	18,090
2 등급	78,150	15,630	83,910	16,780
3,4,5 등급	73,800	14,760	79,240	15,850

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

(30일 기준)

등 급	1일 금액	1개월 금액	본인 부담금		
		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
1 등급	90,450	2,713,500	542,700	325,620	217,080
2 등급	83,910	2,517,300	503,460	302,076	201,384
3,4,5 등급	79,240	2,377,200	475,440	285,264	190,176

** 비급여 항목(식재료비 및 간식비 : 9,900원 X 30일 = 297,000원) 별도입니다.

**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.

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**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(3.93%) 조정** 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.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, 2025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 됩니다.